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 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현직공무원을 시 산하기관에 파견하거나
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취업할 경우 우려되는
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사를
의회 차원에서 견제·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
마련하고자 제안됐습니다.

□ 구체적으로는
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

산하기관장은 이를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
보고하도록 하고,
시 소속 공무원을 산하기관으로 파견할 시 해당 공무원의
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
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
있습니다.

□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
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